

「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의안번호 제2328호

「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에 따라('20.12.22. 공포, '21.6.23. 시행)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.
- 그 외,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'법관'을 '판사·검사·변호사'로 개정하여 「공직자윤리법」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,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.

-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,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